"SAFER SHIPS, CLEANER SEAS"

# (사) 한 국 도 선 사 협 회




수 신 : 수신자 참조

참 조 : 각 도선사회 회장

제 목 : 도선료총액할인제도 적용선사 신청서 접수

1. 항상 우리협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도선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선박의 국내항만 기항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도선료총액할인제도(Volume Discount)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 ~ 12월 31일(6개월간)**까지 도선료총액할인제도 적용이 예상되는 선사의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0년도(1년간) 도선료 내역을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21년 6월 18일(금)까지 우리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올해 도선료총액할인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고자 2021년 12월 31일(6개월간)까지 적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선료 집계표에는 도선선료가 포함되지 않음
나. 「해상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개별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적용 (자(子)회사와 계열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 내역 제외)
다. 2020년 1년간 국내항만에서 도선료를 지급한 선사에 한함(대리점이 아님)
라. E-mail 접수도 가능함(한국도선사협회 : kmpilot@kmpilot.or.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로 연락 바람

붙 임 : 1. 도선료 총액할인제도(Volume Discount) 적용지침 1부
2. 2020년도 도선료 내역 양식 1부. 끝.

한 국 도 선 사 협 회
회 장 조 용 회

수신자 : 한국해운협회장,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대 리 **전 진** 과 장 **최재원** 부 장 **임재근** 해무실장 **김명석** 상 무 **윤석배**
시행 도선협 제117호 ( 2021. 06. 09. ) 접수 ( )
우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10층(여의도동, 오성빌딩) / www.kmpilot.or.kr
전화 (02)784-6022 전송 (02)783-0931 / kmpilot@kmpilot.or.kr

# 도선료총액할인제도(Volume Discount) 적용지침

## 1. 목적

본 지침은 도선료총액할인제도(Volume Discount)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선박의 국내항만 기항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선사'라 함은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3. 적용범위

도선사는 국내항만에서 연간도선료를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여 지급한 선사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도선료를 청구한다.

| 연간도선료 | 15억원 이상<br>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br>25억원 미만 | 25억원 이상 |
|---|---|---|---|
| 할인율 | 5% | 8% | 10% |

## 4. 산정기준

선사별 연간도선료 산정은 선사가 국내항만에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도선사협회 산하 각 지회에서 발생·지급된 도선료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5. 확인방법

연간도선료총액은 도선이용자단체 또는 선사가 한국도선사협회에 통보하고, 이를 한국도선사협회가 각 지회를 통해 확인한다.

## 6. 시행절차

한국도선사협회에서는 통보된 연간도선료총액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 선사별 도선료총액할인제도의 적용 여부 및 할인율을 도선이용자단체 또는 해당선사에 통보한다.

## 7. 시행일

본 할인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기타 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끝.

# 2020년도 도선료 지급 내역

선박회사명(Name of Owner) : _____.

| 일 자 | Invoice No. | 선 박 명 | 항차번호 | 항만명 | 도 선 료(단위:원) | 지방대리점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2020년 도선료 지급 총액 : _____ 원

※ 1. 일자 및 Invoice No.는 우리협회의 12개 도선사회에서 발행한 청구서(Bill for Pilotage) 상의 일자 및 Invoice No.를 기입할 것.

2. 항만명 :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 마산, 대산, 포항, 군산, 목포, 동해, 제주 - 12개 도선사회

3. 도선료에는 도선선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한국선주협회 회원사의 경우, 외국선주의 대리점업무를 행한 선박의 도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